

1. 예산 총 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352,898,418 | 10,586,953 |
| 일반회계 | 320,493,890 | 9,614,817 |
| 특별회계 | 32,404,528 | 972,136 |
| 기타특별회계 | 32,404,528 | 972,136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,910,008 | 57,30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12,000,190 | 360,006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627,693 | 18,831 |
|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| 3,830,000 | 114,900 |
|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735,076 | 22,052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3,431,273 | 102,938 |
|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| 119,000 | 3,57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613,738 | 18,412 |
|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| 4,921,550 | 147,647 |
|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| 106,000 | 3,180 |
|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| 4,110,000 | 123,300 |

제 2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서"와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3,335,083천원이며, 재해·재난 예비비 700,000천원을 포함한다.

제 6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